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4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되어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과 배우자,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훈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하고,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가구원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급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수급희망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수급희망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다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수급희망자의 부양의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수급희망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사람

제25조의5(종전의 제2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한다.

제25조의6(종전의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종전의 제25조의5)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종전의 제25조의5) 제4항 중 “부양의무자”를 각각 “가구원”으로 한다.

제25조의7(종전의 제25조의6) 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급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3(가구의 범위) ① 법</u> <u>제1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u> <u>호의 사람을 말한다.</u>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u>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u> <u>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u> <u>「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u> <u>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u> 2. <u>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u> <u>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사람</u> 가. <u>수급희망자의 배우자(사</u> <u>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u> <u>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나. <u>수급희망자의 미혼자녀</u> <u>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u> <u>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생</u> <u>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u> <u>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u> <u>다.</u> 다. <u>국가보훈부장관이 수급희</u> <u>망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u> <u>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u>

정하는 사람. 다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수급희망자의 부양의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수급희망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사람
제25조의3 (생 략)	제25조의4 (현행 제25조의3과 같음)
제25조의4(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u>부양의무</u>	제25조의5(확인조사) ----- ----- ----- ----- ----- ----- ----- <u>가구원</u> -----

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
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
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
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구원 -----

제25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

가구원

합하여야 한다.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
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
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
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2. ~ 4. (생 략)

③ (생 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
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의무자의 금융
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의6(생활조정수당 신청 안

-----.

1. -----
----- 가
구원-----
--

2. (현행과 같음)

② -----

--.

1. -----
----- 가
구원-----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가구원-----

--.

제25조의7(생활조정수당 신청 안

내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2. (생 략) ② ~ ④ (생 략)	내 등) ① ----- ----- ----- -----. 1. -----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급여-----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11